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4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김주영 · 박 정 · 정태호
강득구 · 이학영 · 김태선
한정애 · 양문석 · 강준현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일자리나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구직급여 기준은 현행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어 계절적 영향에 따른 임금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변경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

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월 보수가”로, “정하는 시간”을 “정하는 보수”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해당 사업에서 <u>소정(所定)근로시간이</u>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시간</u> 미만인 근로자 3. ~ 5.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적용 제외)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u>월 보수가</u> ----- ----- <u>정하는 보수</u>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u>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u> [이하 “ <u>기초일액(基礎日額)</u> ”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 <u>근로기준법</u> 」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u>보수일액</u>) ① <u>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u> [이하 “ <u>기초일액(基礎日額)</u> ”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 -----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